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장상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김종무, 김창원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노식래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송정빈,
양민규, 이성배, 이영실,
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한기영, 황규복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참여 가로주 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을 상향함으 로써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·공고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건폐율을 50% 이하로 완 화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9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단서 중 “4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</p> <p>3.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(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,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